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021. 10. 19. 자)

1.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차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8307호, 2021. 7.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2. 약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직무 수행방법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및 업무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021. 10. 19. 자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인

수신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한국약사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 바이오의약품협회장, 한국한약산업협회장, 한국한약유통협회장, 한국한약제품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한약 사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방의사협회장, 한국중원약사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 치과병원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장,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주무관 원정우 사무관 한연경  
 의약품정책과 전결 2021. 10. 19.  
 장 문은희

협조자

시행 의약품정책과-9850 (2021. 10. 19.)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의약품정책과 / www.mfas.go.kr

전화번호 043-719-2621 팩스번호 042-719-2820 / jwwon3595@korea.kr / 대국민 공개

힘내라 대한민국!